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조 현 예

■ 지방재정 주요 질의·회신 [III]

※ 본 질의회신 사례는 최근(2007년~2009년)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질의회신을 종합한 것으로서 3회에 걸쳐 게재하는 것임

- 2007년 질의회신(Ⅰ), 2008년 질의회신(Ⅱ), 2009년 질의회신(Ⅲ)

〈예산편성 및 운용 분야〉

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편성
2. 환경미화원 인부임 적용대상
3. 청소년 캠프 행사운영비 지원가능 여부
4.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가능여부
5.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방법
6.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지원 가능여부
7.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의 예산편성
8. 민간자본보조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 철거시 보상금 귀속
9. 자치단체 내부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10.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용역비의 예산편성
11. 민간단체 일상적인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능여부
12.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로 의정연구 활동비 집행 가능여부
13. 지방의회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가능여부
14. 민간행사 보조금 예산편성 가능여부
15.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가능여부

〈기 금〉

16.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예산의 이·전용, 이월〉

17. 보상절차 진행 중 사고이월 가능여부
18. 전년도 이월예산 또는 계속비 예산의 불용처리
19. 시설비 낙찰차액의 변경사용 가능여부
20. 이월 예산의 변경사용 가능여부
21. 명시이월비에 대한 의회의 의결
22. 사고이월비 부대경비의 범위

〈기타 재정제도 관련〉

23. 수입대체경비 추가지정 가능여부
24.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에 따른 출연금의 세입 처리 가능여부
25. 예산성과금 지급 요건
26.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의 금고 예치
27. BTO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여부
28.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여부
29. 지역민간항공사 출자금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여부
30. 소하천 정비사업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여부
31. 청소구 설치 및 수도관 세척사업 투융자 심사대상여부
32. 사업운용비용 보조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범위
33.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가능여부
34. 금고로 약정되지 않은 기관에 현금 예치 가능여부
35.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기준
36.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항목
37. 특수목적법인 사업협약 해지가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
38. 지방교부세로 재단 출연금 지원 가능여부
39. 국유재산 위탁관리 경비의 부담 주체
40.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가능여부
41. 기초자치단체의 대학교 재정지원 가능여부
42. 지역발전협력 공적 반환 현금 등 예산편성



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편성

‘ 재정정책과-102 (2008.04.23)



질의내용

- 지원된 국·시비로 민간에 배부할 농기계 및 자재구입비를 자산취득비 또는 민간자본이전 중 어느 과목에서 편성하여야 하는지
- 국·시비로 건축하여 민간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복지회관(건물) 개·보수비를 시설비 또는 민간자본 중 어느 과목에서 편성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서 예산과목이란 경비성질에 따라 구분한 예산편성의 방법임
 - 따라서, 경비성질이 자산취득비인지 민간자본보조인지는 사업추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임
 - 동 규정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는 건물 및 공작물 등 자치단체의 자본형성적인 성격을 가진 예산과목으로서, 취득 후 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과목임
 - 반면, 민간자본이전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보조금관리조례」 및 「보조금교부결정서」에 의하여 경비를 지급하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는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편성하는 예산과목임
-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에는 자산취득비¹⁾ 과목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경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명의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임

1) 동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민간에게 양여가 가능할 것임



2

환경미화원 인부임 적용대상

재정정책팀-222 (2008.02.27)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행자부 훈령 제204호, 2006. 7.31)」에 따라 정규시간에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공원·하천의 청소 및 쓰레기 수거에 종사하는 일용인부를 환경미화원 인부임²⁾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답 변

- 「세출예산 목구분과 설정규정」은 환경미화원을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담당 업무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특히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의 취지는 비록 유사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을지라도 정규시간에 건물 및 청사에 근무하는 청소원 등의 경우는 주로 비정규시간에 근무하는 통상적 의미에서의 환경미화원과는 다르게 근무형태에 따라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한 것임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정규시간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하기 보다는 정규시간 근무여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구)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은 2005년까지 통보되었으나, 2006년 이후에는 별도 기준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음



3

청소년 캠프 행사운영비 지원가능 여부

재정정책팀-35 (2008.01.11)

**질의요지**

-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캠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상에 행사운영비(201-03)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행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참가자에게 실비 보상적으로 제공되는 숙식비 등의 경비는 행사실비보상금(301-10)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가능여부

재정정책과-82 (2008.04.16)

**질의요지**

- 도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실에 배치된 직위 없는 5급(계약직 가급 2명 포함)에게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08.2.5)」에 의거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은 당해직급 보조기관의 기준액을 적용하고,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의회의 전문위원실에 배치된 직위 없는 5급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전문위원의 직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성격인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지급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5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방법

재정정책과-83 (2008.04.16)



질의요지

- 지방재정법 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하 행정안전부 훈령 제234호)상 순세계잉여금의 정의와 범위가 다르며,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 개정 전이라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52조로 적용·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지방재정법 제52조에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결산상 잉여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정만 있으며,



- 훈령 제234호에서는 잉여금 중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 과목으로 세입편성하도록 규정함
 - ※ 결산지침에서는 채무상환 공제 후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에서는 잉여금과 세계잉여금으로만 규정
- 상기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 결산지침에서 채무상환금(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과 이월금의 공제 후의 금액 중에서 상환)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도 공제된 후로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8. 7 의견수렴 후 훈령개정³⁾ 예정)
-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어도 훈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 각각의 규정들은 상충된다기 보다 목적에 따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6

방법용 CCTV 설치 예산 지원 가능여부

재정정책과-98 (2008.04.23)



질의내용

-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방법용 CCTV 35대 설치경비를 지원 요청하여 관행적으로 설치 및 관리비를 지원하였으나, 국가사무인 경찰업무의 방법용 CCTV설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지원가능 여부

3)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순세계잉여금 :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답변내용

-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는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

- 따라서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의 경비는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됨

7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의 예산편성

재정정책과-99 (2008.04.23)



질의내용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 중 각1회 이상 설계 경제성 검토를 의무화 함에 따라 외부전문설계사와 공동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을 추진할 경우, 용역비를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중 어느 예산과목에 편성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234호)에 의한 시설비(401-04)의 경비성질은 건물·공작물·구축물의 신·개축 등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임

-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은 시설공사의 직접경비보다는 부대적인 성격이 강한 경비로 사료되어 ‘시설부대비(401-06)’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8

민간자본보조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 철거시 보상금 귀속

재정정책과-109 (2008.04.24)



질의내용

- 1998년에 시비보조로 신축된 경로당(시비 87.5%)이 주민이주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보상금의 귀속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보조금 사업종료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보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환수 등에 대하여 보조금 조례와 보조금 교부결정서의 조건에서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 해왔음
- 따라서, 동사안과 같은 보상금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귀시의 보조금관리조례의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조항과 교부결정서를 참조하여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9

자치단체 내부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재정정책과-108 (2008.04.24)



질의내용

- 문화제 행사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장인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한 바, 백제문화 보존관리와 활용 등에 대한 협의 및 결정 기능을 가진 동 위원회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보조금 조례,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보조금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임
- 「백제선양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위원장이 군수인 점을 감안할 때 동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집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0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용역비의 예산편성

재정정책과-224 (2008.07.04)



질의요지

- 군의회에서 행정사무 조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실시한 모든 사업에 대한 의



부용역 조사를 목적으로 의회비 또는 의회사무과 일반예산에 편성·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사활동으로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의회사무과 일반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경비의 성질상 의회비에서의 집행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에서 시행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목적으로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의 중복집행 등이 우려됨

11

민간단체 일상적인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능여부

재정정책과-342 (2008.07.22)



질의요지

- 민간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능여부



답 변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보조금관리조례, 교부결정서에 의하여 지원여부, 사업내용, 정산 등이 결정됩니다.



- 또한, 지방재정법령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은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셋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령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민간단체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12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의정 연구활동비 집행 가능여부

재정정책과-844 (2008.09.08)



질의요지

- 의정연구 활동비 지원 가능여부



답 변

-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매월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이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그 경비의 성격이 포괄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임(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또한 이 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연구활동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며,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집행한다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내 지방



의원들의 연구단체 연구 활동에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됨

13

계약심사업무담당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재정정책과-1008 (2008.09.19)



질의요지

- 08. 8월부터 시행중인 계약심사과의 업무 즉,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회계·계약 담당공무원”으로 보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답 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제129호)」상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 그 구성원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 회계공기업과(회계공기업과-1256, 2008.9.10)에서는 계약심사업무가 계약업무의 일부이며 시·도별로 계약·심사 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왔음
- 따라서 질의하신 원가 및 설계 분석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업무 담당공무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회계·계약 담당공무원”으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4

지방의회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가능여부

재정정책과-1549 (2008.10.22)



질의요지

- 지방의회 연구용역비 및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급식비 등 기본경비 예산편성 가능여부



답 변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여비, 회의수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한 경비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집행부의 예산편성 항목인 연구개발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별도의 예산편성은 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연구개발비와 기본경비 집행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명의로 공적인 활동이라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4

민간행사 보조금 예산편성 가능여부

재정정책과-1748 (2008.11.05)



질의요지

- 민간행사와 관련된 보조금의 예산편성 과목



답 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할 경우 제약 조건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정의와는 관련성이 없음
-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 가능 할 것임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기는 하나 자치단체의 재정범위 (일반, 특별회계)밖에서 관리되는 영역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에 서 예산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15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가능여부

재정정책과-1752 (2008.11.05)



질의요지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의 가능 여부





답 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그 목적과 설립이 정하여진 기관이며, 동법 제48조의12에서는 자치단체가 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 사무 및 자치단체의 권장하는 사업 여부」가 공공기관을 판단하는 준거라 할 것으로, 귀 시에서 소관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판단한다면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공공기관에 보조할 수 있는 예산과목은 없고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고는 하나, 자치단체의 재정범위(일반, 특별회계)밖에서 관리되는 영역임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보조 방식을 통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에도 동 사업의 영속적인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조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재산의 귀속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6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재정정책과-144 (2008.05.14)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서 주요항목의 단위를 장·관·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별예산 체계에서의 주요항목의 범위



답 변

-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품목별예산 체계의 세출항목은 장·관·항·세항·세세항·목으로 구분하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사업별예산 체계의 세출항목을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서 주요항목의 단위를 장·관·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별예산 체계에서의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이 이에 해당됨

17

보상절차 진행 중 사고이월 가능여부

재정정책팀-151 (2008.02.15)



질의요지

-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사업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절차 착수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소유주가 변경되어 매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다른 부지매입을 목적으로 기 시행한 지출원인행위를 근거로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 보상절차를 진행 중 소유주가 변경되어 보상 진행이 중단되어 지출원인행위는 사고이월 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사고이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답 변

-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1호에 의거 세출예산의 사고이월은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로 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부지매입 보상비 사고이월 가능 여부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보상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귀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18

전년도 이월예산 또는 계속비 예산의 불용처리

재정정책과-216 (2008.07.01)



질의 -1

-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불용액)이 조기에 확정된 경우 그 금액만큼 추정 시 감액 경정하여 타 용도로 예산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답 변

- 위 내용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이월예산의 이·전용 불가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하여 모든 이월예산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불용액)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결산 이전에 미리 앞당기어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따라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불용액)이 조기에 확정된 경우 그 금액만큼 추정 시 감액 경정하여 타 용도로 예산 편성하여 사용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질의 -2

- 계속비 연부액 중 집행하고 남은 금액(불용처리)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연부액에 그 금액만큼 증가시키는 추가편성 가능 여부



답 변

- 지방예산 운영이란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야 함
- 회계연도를 지나 불용처리가 되었다 함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요건이 완성된 것으로 다음 연도의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 될 것임
- 다만, 계속비 사업의 다음연도 연부액이 많거나 적을 경우 불용처리와 관계없이 추경에서 그 연부액의 삭감 또는 증액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19

시설비 낙찰차액의 변경사용 가능여부

재정정책과-1435 (2008.10.15)



질의요지

- 시설비 낙찰차액의 변경사용 가능여부





답 변

-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은,
 - 세출예산을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함
 - 그러나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도 실제 집행 시 목적에 계상된 예산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체, 이용, 전용, 변경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인건비, 시설비및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는 전용과 변경사용이 제한됨(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
- 상기 규정에 따르면 동일 세항 내 동일 시설비및부대비 내의 낙찰차액을 다른 사업의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의 변경사용이 가능함(품목별 예산제도 상)
 - 다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용의 범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전용의 범위는 예산부서의 승인을, 변경사용의 범위는 실국의 내부 결정을 거쳐 집행되어야 함

20

이월 예산의 변경사용 가능여부

재정정책과-2011 (2008.11.19)



질의요지

- 감사원 감사결과로 취소된 사업비의 반납 통보에 따라 반납을 위하여 이월예산(시설비 및 부대비)의 과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29호, 2008.7.28)에서는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질의한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내의 통계목 변경이 아닌 다른 편성목으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세출과목 변경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우선, 정리 추경 시 국고보조금반환금을 편성·집행하고 이월예산은 불용처리 후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21

명시이월비에 대한 의회의 의결

재정정책과-2308 (2008.12.10)



질의요지

- 명시이월을 위하여 설명서 첨부시기가 익년도 당초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안 편성 시 명시이월비 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의결 요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 변

-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할 경우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상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동일 회계연도의 예산(추경)에서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부득이 당해 연도에 추경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 당초예산으로 의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 구체적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2

사고이월비 부대경비의 범위

재정정책과-2583 (2008.12.23)



질의요지

-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라 함은 원인행위가 불필요한지 여부
- 부대경비의 구체적인 정의
- 시설공사 수행에 있어 시설비로 편성된 상수도 인입비, 도시가스 분담금 등이 부대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답 변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사고이월비로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본 사업비의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 없이도 이월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경비에 대해 명확한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시설부대비는 당해 시설공사의 조달 계약수수료, 공공료,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당해 공사이행과 직접 관련된 공사경비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이에 준하는 필요경비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부대경비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결정하시기 바람

23

수입대체경비 추가지정 가능여부

재정정책과-166 (2008.05.29)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수입대체경비 추가 지정가능 여부 관련

**답 변**

-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입대체경비는 공무원교육원(교육비, 임대료), 보건소(진료비), 보건환경연구원(연구용역비) 3대 기관, 4가지임
-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수입대체경비의 대상 지정과 운영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입대체경비제도 개선계획”(재정정책과-660 ‘08.4.18) 공문을 통하여 금년 내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7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개정하겠다고 한 바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과 충돌될 소지가 많은 수입대체경비를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2009년도 이후 자치단체



에 권한이양이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앞으로는 개별 자치단체별로 검토·협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4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에 따른 출연금의 세입처리 가능여부

재정정책과-106 (2008.04.24)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 평가항목의 출연금을 금고지정 약정서에 명시한 경우 출연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한 기금 등을 제외하고는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40호)의 3.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금고지정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의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금고약정서상에 출연금이 명시된 경우는 약정서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령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잡수입)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25

예산성과금 지급 요건

재정정책과-111 (2008.04.26)



질의내용

1.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지출절약의 요건’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예산절약’에 대해
 - 가. 편성된 예산의 지출을 절약한 경우에 한정하는지
 - 나. 절약이 예정되어 당초부터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비의 절약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2.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수입증대의 요건”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대해
 - 가. 현금성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 한정하는지
 - 나. 세입의 증대 개념을 수입증대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공유재산을 증대시킨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내용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 “수입이 증대”된 경우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동 규정의 해석에 있어 기부채납이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성 측면과 증양부처의 예산성과금 운영상황 등을 감안할 때,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중앙부처는 국유재산법 제3조에 의한 국유재산이 증대된 경우를 예산성과금 관련 규정에 명시

3. 다만, 주민·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채납, 기부자에게 반대급부를 주는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 담당공무원 또는 자치단체가 당연히 수행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각종 지역개발·민자산업·법령상 필수 기반시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루어진 기부채납 등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타당할 것임
- 이에 따라 해당기관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는 동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실한 객관성을 확보한 후 예산성과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6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의 금고 예치

재정정책과-140 (2008.05.13)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7조제1항에 ‘출납원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도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공금에 시·군·구공금의 포함여부 및 시·도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답 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재무회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동 규칙을 근거로 하여 자치단체별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별도의 사항을 정하여 운영토록한 것임



- 또한, 현금의 시·도공금지급대행점 예치와 관련한 재무회계규칙 조항은 현금의 안전적 보관 및 개인보관 등에 의한 금융사고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며, 공금지급대행점은 동 규칙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하면 약정되는 것임
- 따라서 공금지급대행점은 시·군·구에서도 자치단체의 조례 및 약정에 의거 시·군·구공금지급대행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인 바, 시·도공금지급대행점과 시·군·구공금지급대행점은 별개의 것이며, 약정서 표준안 등 공금지급대행점 업무처리의 세부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편람('08. 2 제작, 배부)을 참고하시기 바람

27

BTO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여부

재정정책과-170 (2008.06.02)

**질의요지**

-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인 BTO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이 투·융자 심사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투·융자 심사제외대상이나
- 그 외 시비가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투·융자 심사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8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 결과 심사대상 여부

재정정책과-172 (2008.06.02)



질의요지

- 2006년도 상반기 △△구 신청사 건립에 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된 “청사 표준면적 이내로 신축하되 의뢰사업규모대비 10%이상 축소하여 추진” 적용에 있어
- “의뢰사업규모대비 10%이상 축소”의 범위에 구분청, 구의회, 지하주차장의 포함 여부



답 변

-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구분청, 구의회에 대해서 의뢰사업규모대비 10%이상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29

지역민간항공사 출자금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여부

재정정책과-171 (2008.06.02)



질의요지

- 지역항공사 정기항공 운송사업의 자본금 200억원중 10억원을 시비로 출자할 경우 중앙심사 대상인지, 지방공기업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아 심사제외 대상사업인지 여부



- 소규모 금액(1~9억원)을 출자할 경우에도 투·융자 심사를 하는지, 기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도 총사업비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설립을 위한 출자라면 투·융자 심사 제외대상이나
- 그 외 시비를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투·융자 심사 주체를 판단해야 할 것임

30**소하천 정비사업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여부**

재정정책과-547 (2008.08.11)

**질의요지**

-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사업의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사업의 투·융자심사 제외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답 변**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은 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있거나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에 한하여 우리부와 협의 거쳐 제외된 사업으로 사업성격이 비슷하다 하여 준용할 수는 없음



31

청소구 설치 및 수도관 세척사업 투융자 심사 대상여부

재정정책과-545 (2008.08.11)



질의요지

-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소구 설치 및 수도관 세척사업」 이 투·융자 심사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청소구를 설치하여 수도관을 세척하는 사업은 기존 수도관에 기능을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동산·동산 취득 등이 미수반되는 개·보수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 투·융자심사 제외 대상임

32

사업운영비용 보조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범위

재정정책과-1110 (2008.09.25)



질의요지

- △△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 운영비용 보조시 예산편성 항목 및 투융자 심사 대상 여부



답 변

-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운영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예산편성 항목은 민간의



자본 형성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29호) [별표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과목에 예산편성 하여야 함

- 사업은 당해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투자 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

33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가능여부

재정정책과-197 (2008.06.18)



질의요지

- '08. 6. 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어 FM-R 방송사업」의 허가신청 자격을 부여 받아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출연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에만 출연이 가능함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보조금 지출 조항임

-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출연이 가능 할 것임



34

금고로 약정되지 않은 기관에 현금 예치 가능여부

재정정책과-320 (2008.07.21)



질의요지

- 자치단체의 금고로 약정되지 않은 회원수협(수협중앙회 포함) 등이 자치단체 및 지방금고와 약정 등을 통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가 보유한 현금 등의 일부를 예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7조 제1항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도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은행은 공금취급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항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의 금고보유 현금의 지급 및 보관 업무의 일부 대행을 위해서는 동 규칙 제99조 및 제100조의 금고약정의 방법에 의거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금고와, 금고업무의 일부대행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상호간 승낙 및 약정을 통해 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수협중앙회를 포함한 회원수협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업무의 일부대행이 가능한 법인에 포함되나, 이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금고의 승낙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음



35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기준

재정정책과-1414 (2008.10.14)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3번 항목 중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평가에 단위농협의 점포수, 지방세 수납실적을 농협중앙회 평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답 변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서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한 이유는 금고이용자인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가급적 많은 이용시설이 골고루 분포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을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따라서 지역주민의 접근 편의성, 전산시스템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36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항목

재정정책과-2310 (2008.12.11)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 ①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항목에 단위농협을 농협중앙회에 포함시키거나 은행과 업무제휴를 한 우체국을 포함시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항목에 단위농협을 농협중앙회에 포함시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항목」에서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를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 편의성, 업무 및 전산 시스템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및 전산시스템 연계는 전반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 금융기관과 업무연계를 한 경우에는 위 근거를 토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목적과 취지로 볼 때 해당 자치단체가 양자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및 근거자료에 의한 확인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임

37

특수목적법인 사업협약 해지가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

재정정책과-2606 (2008.12.24)



질의요지

- △△시에서 출자하여 설립 예정인 (주)△△테크노밸리와의 사업협약서상 ‘해지시 정산’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또는 제44조(채무부담행위)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그리고 동 사항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



는지



답 변

- △△시와 향후 설립예정인 (주)△△테크노밸리와 사업협약서상 대출원리금을 포항시가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책임여부는 법원 및 법률전문기관의 판단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됨
- 또한, 사업협약서상 ‘해지시 정산’내용이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38

지방교부세로 재단 출연금 지원 가능여부

재정정책과-2622 (2008.12.26)



질의요지

-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예산을 △△광역시 예산(출연금)에 편성 □□기념재단에 출연할 경우 △△광역시에서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령과 훈령, 예규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경비라 하더라도 예산집행에 있어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과목을 선택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념재단의 출연금은 △△광역시에서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9

국유재산 위탁관리 경비의 부담 주체

재정정책팀-36 (2008.01.11)



질의요지

- 국유재산(배수로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련 경비를 소관 중앙부처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해야 할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해당 중앙부처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0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가능여부

재정정책과-363 (2008.07.23)



질의 -1

- 기초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과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이체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시·도교육청을 설치하고, 시·도내 교육·학예경비지출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며, 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벗어난 협약서를 근거로 교육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 학교용지매입비 등 학교 설립비용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지역의 학교용지매입비 일부를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 -2

-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이전에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지원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시·군·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시설개선과 관련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지만, 이는 단위학교장의 예산지원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학교설립 이전에 동 법령을 근거로 삼기는 곤란할 것임
-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교육사무에 대한 경비지출이 가능한 바, 개별법령 근거에 대해서는 교육사무소관부처인 교육과 학기술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재정정책과-1405 (2008.10.14)



질의요지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대학(교)에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갑 설)**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을 고려했을 때, 고등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시·도교육감)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동 규정을 근거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립대학에 대해 직접 재정지원을 할 수 없음
 - **을 설)** 고등교육법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 조항을 근거로 기초자치단체가 국립대학을 비롯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답 변

- 현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별도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교육·학예사무를 시·도사무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집행기관으로 시·도지사에게서 권한과 책임이 분리된 시·도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회계 역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를 별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법령에 “시·군·자치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학예사무 관련법령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42

지역발전협력 공적 반환 현금 등 예산편성

재정정책과-1763 (2008.11.05)



질의요지

- 지역발전협력 공적반환 현금 및 현물의 예산편성 관련 질의



답 변

- 우선, 지역발전협력 공적반환되는 현금과 현물의 성격 등이 규명되어야 하며 귀 시의 수입 또는 소유로 할 수 있는지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만약 수입 또는 소유를 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임
 - 현금이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가 가능할 것이나,
 - 기부채납으로 받은 현물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들의 공로대가로 수혜금 또는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하는 현물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지 않고, 보상금의 반대급부적 성격을 가진 점을 감안할 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기부채납 되는 현물에 상응하는 재정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주민 복지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